

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16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3. 2. 10.	회 부 일	2023. 2. 13.

1. 제안이유

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읍면지역 등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연료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안 제4조제3호 규정(공사비 전부지원 가능)에 맞게 안 제3조 제5항 정비
- 나.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규정 신설(안 제4조제3호)

3. 검토의견

- 가.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연료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9조의3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